「지식재산과 국제사법에 관한 ILA 가이드라인」(교토 가이드라인)의 국문번역

이규호(Gyooho Lee)1, 이종혁(Jong Hyeok Lee)2

결의 6/2020

세계국제법협회(ILA) 지식재산과 국제사법 위원회

202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세계국제법협회 제79차 대회에서,

정보화사회의 국제적 맥락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이 거래를 구축하고 국제적 분쟁을 재판하는 전 통적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청구를 비롯한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 초국경적인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편익을 인지하며,

국내 입법과 국제조약의 해석과 개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모델조항의 채택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이 분야에서 모델조항안에 대한 기존의 노력, 특히 미국법률협회, 지식재산에 관한 저촉법에 대한 유럽 막스프랑크 그룹, 일본 투명화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제사법학회 회원들이 추진 한 모델조항 초안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및 국내적 원칙의 발전을 고려하고

지식재산과 국제사법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작하면서,

이 결의에 첨부된 지식재산과 국제사법에 관한 교토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이 분야에서 국내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작업하는 단체, 국가 및 이해관계 조직에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며,

¹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Law).

²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세계국제법협회 사무총장에게 결의와 그 부속서를 적절한 국제기구, 특히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고,

지식재산과 국제사법 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수함에 따라 해체할 것을 집행이사회에 권고한다.

부속서

지식재산과 국제사법에 관한 가이드라인("교토 가이드라인")

<u>통칙</u>

제1조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 1. 이 가이드라인은 복수의 국가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적용한다.
- 2. 해당 사안이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동일한 사실관계 및 비공개정보의 보호를 포함하는 동일 한 사실관계에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은 부정경쟁행위 에 기한 청구에 준용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 1.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설계, 상표 및 그와 유사한 권리를 뜻한다.
- 2. "판결"이란 특정국가가 판결에 이르는 절차를 일컫는 명칭 또는 판결, 명령이나 집행영장과 같이 재판 그 자체에 부여한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특정국가의 법원 또는 기관이 선고한 재판을 뜻한다. 또한 "판결"은 법원이 승인한 화해, 보전조치 및 보호조치, 그리고 법원직원에 의한 비용 또는 경비의 확정을 포함한다.

재판관할권

일반관할권

제3조 피고에 대한 일반관할권

이 가이드라인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자신의 상거소인 국가 소재 법원의 재판관할 권에 속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다른 국가의 지역에도 무제한적으로 미친다.

대체적인 재판관할권

제4조 계약

지식재산 이용허락 또는 이전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해당 이용허락이 부여된 국가의 법원 또는 권리가 이전된 국가의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해당 법원이 소재하는 국가의 영토로 제한된다.

제5조 침해

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

- a) 침해혐의자가 침해행위를 개시하거나 계속한 국가의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구제책을 부여할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도 무제한적으로 미친다. 또는
- b) 침해가 직접적인 실질적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그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해당 법원이 소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 한하여 미친다.

제6조 저작물의 이용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의 이용으로 인한 법적 보상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객체의 적법한 이용에 대한 법적 보상금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건에서 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은 해당 법원이 소재하는 국가의 영토에 한해 미친다.

제7조 병합

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소를 제기한 원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다른 피고들에 대하 여 해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 a) 해당 분쟁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부여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에 관한 경우,
- b) 해당 국가에서 상거소를 둔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모순되는 판결의 중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함께 재판하여야 할 경우 및

c) 해당 국가에서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각 피고에 대하여 쟁점이 된 지식재산권과 각 피고에 관한 분쟁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8조 권원 및 귀속

권원과 권리 귀속에 대해서만 관련된 사건에서 지식재산이 존속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출원이 계속 중인 국가의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재판관할권

제9조 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특정 관계의 당사자는 해당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 권을 가지는 법원을 합의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합의된 법원은 당사자가 해당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제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계약상 의무 및 비계약상 의무 그리고 해당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재판관할권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속적이다.

제10조 변론관할권

피고가 출석하여 최초의 항변에서 재판관할권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1조 유효성 청구 및 관련 분쟁

- 1. 주된 쟁점으로서 등록지식재산권의 부여, 등록, 유효성, 포기 또는 취소를 주된 소송물로 하는 절차에서 등록국의 법원은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2.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법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확인청구의 소

법원은 실체적 구제책을 구하는 상응하는 소송과 동일한 청구이유를 토대로 한 소극적 확인청구 또는 적극적 확인청구의 소를 심리할 수 있다.

제13조 보전조치 및 보호조치

- 1. 사건의 본안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보전조치 및 보호조치를 명할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2. 다른 법원들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보전조치 및 보호조치를 명할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4조 금지처분의 적용범위

금지처분의 적용범위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효력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더욱이, 그 적용범위는 집행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보다 광범위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반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청구를 판단할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본소청구가 토대로 한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반소청구를 판단할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6조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불충분한 사유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불충분한 사유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 a) 특정 국가에서 피고의 자산, 유체재산 또는 지식재산의 존재. 다만, 분쟁이 그 자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b) 원고 또는 피고의 국적
- c) 해당 국가에서 원고가 거소만 가지고 있는 경우
- d) 해당 국가에서 피고가 상행위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단순히 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 해당 국가에서 피고가 현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또는 해당 국가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 송서류를 송달한 경우 또는
- f)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을 해당 국가에서 완성한 경우

조정 및 공조

제17조 동일한 소송상 청구에 기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절차

1. 동일한 소송상 청구에 기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절차가 복수의 국가의 법원에서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들은 다음의 조건으로 절차의 조정을 고려한다.

- a) 최초의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이 국제적 소송경합을 이유로 절차를 정지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최초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정지하고 그 이후에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최초의 수소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원이 해당 분쟁을 심리하기에 적절한 법원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경우에는 그 절차의 정지는 해소될 수 있다.
- b) 최초의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따라 각하할 권한을 가지거나 더 편의로운 법정지로 이송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사익, 공익 및 사법행정적인 쟁점을 고려하여 가장 편의로운 법원을 참작한다. 최초의 수소법원이 더 편의로운 법원인 경우, 후소의 수소법원은 최초의 수소법원이 그 사건을 각하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건을 각하하거나 이송한다.
- 2.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해당 절차가 후소의 수소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이 속하는 경우,
 - b) 해당 절차가 보전조치 또는 보호조치를 위한 경우 또는
 - c) 후소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최초 수소법원의 판결이 후소 의 수소법원의 국가에서 승인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하는 경우

제18조 관련 절차

관련 절차가 복수의 국가의 법원에서 계속 중인 경우, 해당 법원 중 어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아 관련 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제고할 그 절차에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하나의 법원에서 절차를 병합하는 것과 다른 법원에서 절차상 소송행위의 조정을 포함한다.

준거법

일반규칙

제19조 존재, 범위와 양도가능성(보호국법)

지식재산권의 존재, 유효성, 등록, 기간, 양도가능성과 범위,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그 밖의모든 문제에 대한 준거법은 보호가 청구되고 있는 국가의 법이다.

제20조 권리의 최초 귀속과 분배

1. (a) 등록된 지식재산권,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의 최초 귀속은 보호가 청구되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 (b) 계약관계 구조에서는, 특히 근로계약 또는 연구개발계약에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준거법은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결정된다.
- 2. (a) 저작권의 최초 귀속은 해당 저작물의 창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는 그 대상의 창작자가 그 창작시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로 추정된다. 보호의 대상이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들은 그들의 상거소지국들 중 하나의 법을 최초 귀속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항은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 (b) 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법의 기본정책이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도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될 수 없거나 포기될 수 없는 권리의 분배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계약

제21조 선택의 자유

- 1.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 2. 다만, 그와 같은 준거법 선택은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제22조에 따라 적용되었을 법에서 당사 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창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그로 부터 박탈하는 결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제22조 선택의 부존재

- 1. 제21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규율된다.
 - a)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당해 계약이 다른 국가와 명백히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한, 당해 계약이 한 국가에서만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 b) 당해 계약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법. 법원은 그 국가를 결정함에 있어 서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당사자들의 공통된 상거소지
 - 당해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실행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
 - 당사자들 중 하나의 상거소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커버되는 국가들 중 하나에 소재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거소지
- 2. 본조의 목적상 일방 당사자의 상거소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23조 근로계약

- 1. 사용자와, 지식재산권을 발생시키는 노력을 한 근로자는 제21조에 따라 그들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선택은 그 법선택이 없었더라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용되었을 법에 따른 것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박탈될 수 없는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결과로 되어서는 안 된다.
- 2. 당사자들의 법선택이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는 근로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안에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로부터, 일상적으로 그의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 3. 근로자가 다른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당해 계약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이외의 국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제24조 형식적 유효성

- 1.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취급하는 여하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 a)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
 - b) 당사자들 중 어느 하나가 계약체결시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
 - c) 계약이 관련되어 있는 여하한 다른 국가의 법
- 2. 본조는 창작자, 실연자와 근로자에게서 제21조 제2항과 제23조 제1항으로부터 유래하는 보호 를 박탈할 수 없다.

침해

제25조 침해에 관한 기본규칙

- 1.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은 보호가 청구되는 각 국가의 법이다.
- 2.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될 수 있다.

제26조 편재적(遍在的) 또는 복수국가에서의 침해의 준거법

- 1. 복수국가에서의 침해가 편재적 또는 다국가적 매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전체 침해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들)의 법(들)을 당해 침해 전체에 대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거법(들)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침해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가 전체 침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곳
 - 당사자들의 상거소 또는 주된 영업소

- 침해를 가중시키는 중대한 행위가 수행된 곳
- 2.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여하한 당사자는 당해 소송에 의하여 커버되는 특정국가들과 관 런하여 이들 중 여하한 국가들의 법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해결책이 전체로서의 당해 사안에 적용하기로 선택된 법(들)에 따라 획득된 해결책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법원은 구 제수단을 구체화할 때 그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위 제1항과 제2항은 지식재산권의 부차적 또는 간접적 침해 사안에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영역에서 권리의 집중관리

- 1.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가 경영상 실제적 본거를 가지고 있는 국 가의 법이 다음을 규율한다:
 - a) 집중관리단체의 특정한 설립구조에 관한 요건
 - b) 권리자와 권리자를 대표하는 다른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집중관리단체를 상대로 하는 관계와 관련한 권리, 조건과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
 - (i) 해당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와 조건
 - (ii) 해당 단체에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
 - (iii) 해당 단체가 권리를 관리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
 - (iv) 해당 단체의 수입을 권리자와 권리자를 대표하는 그 밖의 집중관리단체에 계산 및 분배하는 것에 관한 요건
 - (v) 집중관리단체가 제공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
 - c) 당사자들의 법선택이 없는 경우 권리 보유자가 이 기구에 권리를 위임하는 계약
- 2.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이 다음을 규율한다:
 - a) 집중관리단체가 일정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관한 보호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추정
 - b) 필수적인 집중관리
 - c) 개별적인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의 사전적 동의 없이 이용허락하거나 법적 보상금을 수 령할 수 있는 권한
 - d)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에게 권리를 이용허락하여야 하는지 및 어떤 조건에서 하여야 하는지의 쟁점
 - e) 사용료와 법적 보상금의 계산에 관한 요건
- 3. 법정지의 법이 집중관리단체의 당사자적격을 규율한다.
- 4. 본조는 경쟁법 규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적용된다.

그 밖의 규정

제28조 공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은 그 효력이 법정지의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범위에서만 거부될 수 있다.

제29조 최우선 강행규정

- 1. 이 가이드라인의 어느 규정도 법정지법상 최우선 강행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 2.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을 계약에 적용하는 경우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 이행되어야 하거나 이행되었어야 하는 다른 국가의 법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 반정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 여하한 국가의 법의 적용은 그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 이외에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법규의 적용을 의미한다.

제31조 중재가능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판단할 때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인 권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범위에서는 중재지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중재판정이 보호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한 보호국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숭인 및 집행

제32조 승인 및 집행의 대상

- 1. 외국판결은 이 가이드라인의 이 장에 따라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 2. 판결이 그 선고된 법원 소재지국에서 여전히 불복의 대상이거나 통상적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국가에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불복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승인 및 집행을 중지하거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한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 및 집행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3.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적 의견진술 없이 내려지고 그 당사자에 대한 사전적 송달 없이 집행될 수 있는 임시적 처분 및 보전처분은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없다.

제33조 외국판결의 효력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된 국가에서 외국판결이 가지는 집행가능성을 비롯한 효력은 가능한 범위에서는 판결국에서와 동일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도 그보다 더 크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승인거부 및 집행거부의 근거

- 1. 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외국판결을 승인 및 집행하지 않는다:
 - a) 그 승인 또는 집행이 청구를 받은 국가의 본질적 공서와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경우
 - b) 그 판결에 이르는 절차가 청구를 받은 국가의 절차적 공정이라는 본질적 원칙과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경우
 - c) 그 판결이 아래에 해당하는 결석판결로 내려진 경우
 - (i) 그 소송의 피고가 그 소송에 관하여 적절히 적시에 통지 받지 못하였던 경우
 - (ii) 그 피고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그 사건에 관하여 변론할 적절하고 유의미한 기회가 박탈되었던 경우
 - d) 그 판결이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이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배제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모 순되는 경우
 - e) 그 판결이 동일한 당사자들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서 내려진 이전의 판결과 모순되는 경우. 다만, 이전의 판결이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f)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할규칙을 위반하여 관할을 행사한 경우
- 2.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창작자, 실연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20조 내지 제24 조의 규칙에 위반하여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
- 3.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을 판단할 때 청구를 받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원래의 소송절차에서 행한 사실인정에 구속된다.
- 4. 제33조, 제34조의 적용에 필요한 심사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 외국 판결을 심사하지 않는다.

제35조 일부 및 제한적 승인 및 조정

- 1. 외국판결이 분리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은 별도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 2. 외국판결이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비전보적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그 판결이 당사자가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원에서 명하였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 한한다.

- 3. 판결이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이 알지 못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그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유사한 목적 및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이 알고 있는 조치로 조정된다.
- 4. 외국판결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이 등록국의 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성에 관한 그 결정은 그 외국판결이 적용되는 당사자들 간에만 효력이 있다.